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-15 호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23년 1월 5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㊞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(안)

1. 개정이유

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한 권고안 및 「폐기물관리법」의 개정내용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대상범위를 조정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범위 조정 정비 (안 제2조의 3)

나. [별표 1]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안 반영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(참조 : 청소과장, ☎ 450-7636, E-mail mycupi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·법인의 경우 단체명·법인명과 그 대표자)